

간호원의 사회 경제적 복지에 관한

특별위원회 보고

차례

서 론

1. 간호원의 사회경제적 복지에 관한 ICN의 활동
사항
2. 노사관계의 동향
3. 각국 간호협회에 적용사항
4. 간호원의 전문직주의, 노동조합주의 및 노사관계

부 록

- A. 간호원의 사회경제적 복지에 관한 ICN의 전략
제의안
- B. 간호원의 사회경제적 복지에 관한 계획수립에
있어서 각국 간호협회를 위한 지침서
- C. 문제의 제기

서 론

1977년 동경에서 개최된 CNR 회의에서, PSI (Public Services International)와 관련하여 ICN과 회원국 및 간호와 건강관리에 적용하는 다음과 같은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ICN의 목적 중 하나는 간호원의 조건을 개선시키기 위해 각국 간호협회를 돋는 것이다. ‘조건’이란 전문직급 뿐만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 지위를 뜻한다.

그러므로 해결책은 PSI와 더불어 각국간호협회와 ICN이 협력하여 깊이 연구하기로 하고, CNR에서 토의된 의견들을 고려하여 이 연구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을 모

색하고 이 연구를 ICN사업 중에서 최우선순위로 놓는 것을 결정하도록 이사회에 요청하는 것이다.

CNR 후 이사회는 CNR의 결정을 고려하여 이사 1명과 전문가 2명을 지명하고 이들로 하여 금본의제를 연구하도록 제안하였다.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승인했다:

“Miss Quinn을 의장으로, Miss Mary Patten과 Miss Toini Nousiainen을 위원으로 하는 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를 일임하여 PSI와 더불어 각국 간호협회와 ICN의 관계를 연구하도록 한다.”**

특별위원회는 1977년 11월 18일부터 20일, 3일동안 본 주제에 관한 참고자료에 대해 연구하였고 1978년 3월 보고서를 이사회에 제출하였다.

특별위원회 위원과 이사회는 본 주제가 매우 광범위하다고 느꼈으나 1977년 동경에서 열린 CNR에서 간호원의 사회경제적 복지는 ICN 모든 사업 중에 최우선순위로 놓아야만 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음을 깨달았고 회장은 연설을 통해 이를 강조하였다. 따라서 이사회는 아래와 같은 제의안을 제출하였다.

“특별위원회는 조속한 시일내에 회의를 개최하여 사회경제적 복지에 관한 ICN의 전략을 입안하고 이를 성취하기 위한 활동에 활용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기로 한다.”***

* CNR 회의록, 동경 1977, p.32 참조

** 이사회 회의록, 1977년 7월, p.7 참조

*** 이사회 회의록, 1978년 3월, p.15 참조

1978년 3월 이사회와 제의에 따라 특별위원회는 1978년 11월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제2차 모임을 개최하였고 1979년 캐나다의 CNR회의에서의 토의를 위한 기초자료가 되는 특별위원회회의 심의요약(부록 참조)을 작성하였다.

특별위원회 의장은 본 의제에 대한 제의안을 CNR에 구두로 보고하기로 하며, CNR은 ICN 사업계획중 간호원의 사회경제적 복지에 관한 여러 논제에 대해 결정할 수 있도록 충분한 토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을 할애한다.

특별위원회 위원 :—Miss Sheila Quinn, 의장
—Miss Toini Nousiainen
—Miss Mary Patten

위원회의 간사는 ICN의 간호자문관인 Miss Maria Rychtelska이다.

1. 간호원의 사회경제적 복지에 관한 ICN의 활동사항

간호원의 사회경제적 복지에 대한 ICN의 사업활동은 1947년부터 시작되었으며 1961년이래로 여러 명의 간부 및 위원회는 이 활동에 전념해 왔다. 이 주제와 관련하여 기왕에 있었던 사업 및 연구보고서와 성명서는 다음과 같다.

—ICN 회원국의 근무조건과 보수에 대한 연구, 1953년과 1957년

—간호원의 근무조건과 고용에 대한 ILO와의 공동연구 및 ILO에 결과보고, 1957~1960년

—1961~65년에는 특히 근무조건과 보수, 단체교섭권에 관련된 40개 회원국의 활동을 보조함.

—간호교육, 간호와 간호사업, 간호원의 사회 경제적 복지에 관한 성명서 발표, 1969년

—간호원의 경제적 및 일반적 복지에 대한 결의안, 1977년

—“파소평가 되었던 간호계의 문제 : 간호원의 사회경제 복지가 환자간호에 미치는 영향” 발간, 1977년

—간호인력의 생활과 근무조건에 관한 규정 149와 전의사항 157에 따르는 ILO와 WHO

와 각국 간호협회간의 협력, 1977년

—정부에 의해 인준된 규정 149의 적용에 대한 평가 및 재조정.

2. 노사관계의 동향

특별위원회의 조사에 의하면 근래 주로 단일 전문단체로 구성된 직업별조합이 다목적 조합으로 변화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라고 지적했다. 그중 몇몇 다목적 조합은 여러 전문단체 혹은 여러 분야의 건강요원으로 구성되었고 또 다른 경우에는 공무원과 같은 특수취업분야의 인력으로 구성된 단체들이었다. 이런 점에서 각국 간호협회들은 조합에 가입이 되어 있든지 되어 있지 않든간에 직업별 조합의 부류에 속한다.

특이할 만한 또 다른 추세는 노사간에 교섭을 하는 것이다. 많은 경우 보건산업에 종사하는 모든 요원을 대표할 수 있는 단일조합이 그들의 근무조건 및 봉급에 대한 교섭 혹은 협상의 상대로써, 정부에 의해 우선적으로 선정되는 경향이 있었다. 정부는 이의 이점을 이미 인정하였고 단일조합의 효과적인 통제방법도 알게 되었다.

소규모의 직업별 조합이나 기구(조직)들은 오늘날의 산업현장의 어려운 상황에서 운영되어 나가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실감하고 있다. 이들 몇몇 조합들은 ‘보건 전문인’들과 같이, 전산업에 걸쳐 이해관계가 비슷한 전문단체들을 연결하는 형태의 종합적인 기구를 조직하려는 경향이 있다. 어떤 경우에는 이 기구가 대여섯 단체의 혼합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연결이 형식적이라고도 할 수 있다. 또 다른 경우 각 단체가 그 자체의 고유성을 보유하면서 공동의 목표를 위해 자원을 공동투자하고 적절한 세력을 갖기 위해 일종의 연합형태를 취할 수도 있다.

또다른 중요한 추세는 근로자의 참여이다. 과거에는 한 기구의 사업의 전문성과 산업활동과 관련된 전문성 간에는 매우 분명한 거리감이 있었다. 근로자 참여 혹은 산업민주주의 등 용어가 어떻게 사용되든지간에 이러한 추세는 전문적 활동과 산업적 형태의 활동을 구별하는데 점

점 더 어려움을 느끼게 한다. 본질적으로 근로자 참여는 모든 의사결정 과정에 피고용인이 참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근로자가 참여 하므로써 특별히 독특한 작업환경을 마련하는 간단한 문제에서부터 피고용인의 업무형태와 피고용인에게 최신기술을 보유하고 그들의 기술에 자신감을 갖도록 해주어야 하는 계획 교육프로그램과 같이 보다 복잡한 문제에 이르기까지의 많은 문제들이 지적되고 해결될 수 있는 것이다.

3. 각국 간호협회에 적용사항

ICN 정관과 시행세칙에 의하면 회원국 협회는 ICN이 정의한 간호원으로 구성되거나 간호분과 위원회가 분명히 구성된 조직의 연합체이어야 한다.

“한 나라에서 하나의 간호협회나 간호연맹이 회원으로 될 수 있으며 간호협회나 간호연맹이 없는 나라에서는 보건에 종사하는 사람들로 구성된 국가적인 기구의 간호분과 위원회로도 ICN 회원이 될 수 있다. 단,

a. 간호협회의 정관, 시행세칙 혹은 규칙은 본 정관 1조 2항에서 정의한 목적에 위해되거나 혹은 2조와 3조에서 ICN의 정관과 시행세칙으로서 기술한 취지와 목적에 위해되어서는 안된다.

b. 간호협회가 다른 의료조직의 한 부분으로서 존재한다면 그협회는 1조 2항 혹은 ICN의 취지와 목적에 위해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의료조직과는 별개의 시행세칙을 갖는다.

c. 국가대표는 ICN의 간호원에 대한 정의에 하자가 없는 사람이어야 하며 회원국협회가 선출한다.”*

그동안 일어난 몇 가지 변화를 보면 첫째 어떤 간호협회들은 협회의 위치를 확고히하기 위해 각급간호원을 ICN 정관에 따라 간호협회회원으로 가입시켰다. 이는 회원수 확보를 위한 결단이며 많은 회원국들이 이를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 둘째로는, 몇 간호협회는 건강산업에 종

사하는 타 전문집단과의 연합형태를 구성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 세째, 특수분야 전문간호원 또는 특정간호원들이 국내의 소규모 단체들과 산발적으로 연관관계를 가지는 경향을 둘 수 있다. 넷째, 극소수의 몇몇 협회는 초창기부터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다. 그런데 自國의 노동법을 고려하여 간호원의 이익을 위해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는 회원국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전문직업 및 그 회원의 권리옹호를 계속하기 위해서 노동조합이나 이와 유사한 부류에 가입하고자 한 전문직 단체간에는 이념적으로 뚜렷한 차이가 있음을 본 특별위원회는 규명하였다. 많은 나라의 노동법을 분석한 결과, 노동자를 위한 전통적인 노동조합의 역할로 부터 전적으로 혹은 거의 대부분, 전문직업인의 경제적 이익을 보장하는 것을 포함하는 보다 광범위한 역할로 변해가는 추세이다. 이러한 추세는 각국 간호협회가 분명히 적용할 수 있는 사항이다.

ICN 회원국은 2가지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
—간호원으로만 구성된 협회로써 앞으로 그들의 위치를 안전하게 굳히기 위해 노동조합과 협력하거나 이와의 연합체로 전환하려는 준비를 하고 있는 경우이며 이러한 협회는 소수이다.

—국내 간호원의 과반수를 회원으로 확보하지 못한 협회로써 간호원을 회원으로 확보한 노동조합과 직접적인 경쟁을 하고 있는 협회가 있다. 이 경우에 그들은 정면으로 대립하고 있고 효율적으로 활동하는 협회일수록 그 대립은 심각하며 대부분의 ICN의 회원국은 이 유형에 속해 있다.

회원국 협회가 거의 독점회원을 갖고 있거나 경쟁적 상황에 있거나 간에 일부는 노동조합에 연관되어 있음이 분명하다. 이런 노동조합이 신체 노동자조합, 사무직조합 또는 소수의 학술적인 노동자조합으로 구분된 나라에서는 회원국간호협회의 목적에 비추어 가장 적절한 연관을 가

* ICN 정관과 시행세칙(1975년 개정안), 6조 1항, a,b,c, p.3 참조.

질 수 있는 노동조합과 연합할 것이 분명하다.

또 사무직과 노동자의 구별이 없고 모든 조합으로 구성된 노동연맹이 있는 나라에서는 대개 간호협회는 이런 연맹의 회원이 되어 여러 가지 이유에서 의지하려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주요인은, 회원이 되어있는 간호원의 이익과 전문직업자체에 적당한 형태의 기구가 되리라고 믿는 직업별 조합이나 전문직기구의 효과를 보존하기 위한 필요성 때문이며 이런 연합체의 경우에는 직업별 대표를 국제노동회의에 참석시킨다.

사회경제적 복지에 관한 ICN회원국의 상황은 크게 5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다. 즉 :

- 1) 한개 이상 혹은 수개의 단체를 가진 회원국.
- 2) 비교적 규모가 작거나 신생단체로써 협상권은 없으나 국내에서의 위치를 인정받고 적절한 사업을 하는 회원국으로써 협상권개발이 가능한 회원국이며 이러한 회원국은 사업계획을 강화하도록 하는 것과 협상권을 개발하고 이를 적절히 활용하는 데 도움이 필요하다.
- 3) 규모가 작거나 ICN에 새로 가입된 회원국들로써 협상권은 있으나 그들의 입장과 계획을 수립하는데 ICN의 도움없이는 유지가 어려운 협회.
- 4) 여러가지 특별한 문제가 있어 ICN의 방문이 필요한 회원국.
- 5) 규모가 작든지 크든지 간에, 대체로 협상권을 가지고 있으나 어떤 일에서나 자신의 상황을 처리할 수 있고 나아가서는 다른 협회를 도와줄 수 있는 회원국.

위의 광범위한 범주에 의해 회원국 지원을 위해 ICN의 경제적복지 프로그램을 계획 수립하는데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다.

최근 노동조합에 등록하거나 다른 기구에 가입하는 등의 특수한 변화를 이루었거나 그런 과정에 있는 협회들이 있다. 이러한 정보가 교환된다면 ICN과 다른 회원국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ICN회원국으로서 사실상 대다수의 간호원이 다른 조직에 가입되어 그 나라를 대표하는 간호협회가 아닌 경우에는 이 회원국은 고려의 대상이 된다. ICN정관과 시행세칙 제 6조 1항에 의거, ICN가입을 원하는 협회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도록 분명히 통고해 주어야 한다. 왜냐하면 보다 많은 회원을 확보하는 제 2의 간호원단체가 생길 경우, ICN에 대표권을 얻지 못하는 데 대해 반발할 것이 분명하며, ICN와 PSI등의 타국제조직에 가입하여 국제수준의 발언권을 얻기 위한 노력을 경주할 것이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이다.

4. 간호원의 전문직주의, 노동조합주의 및 사회 경제적 복지

전문기구는 전문직 수행의 개선과 발전을 추구하고 그 지역사회를 안전하게 돌보며, 그 기구에 속해있는 전문인의 이익을옹호하기 위해 존재한다.

이러한 모든 목표는 개인의 단독적인 활동에 의해서는 가능하지 못하며 집단활동에 의해서만 성취되어질 수 있다. 이런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전문기구는 사회이익과 전문직 발달과 전문인의 경제적 이익에 관심을 기울여야만 한다.

전통적으로 노동조합은 회원의 근로조건에 가장 큰 관심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점차 이러한 노동조합의 전통적인 역할은 변화되어 가고 있다. 오늘날 노동조합은 간호원이나 간호사업에 영향을 주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국제적 국가적 차원에서 스스로를 간호인력의 유일한 적정대변인으로서 간주하고 있으며 또 그렇게 인식되기를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주목된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전문가들의 단체교섭의 경향이 점점 증가되는 것은 최근에 이어서였다. 이런 변화의 결과로써, 노동조합으로 등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느낀 간호기구가 여럿 있었다. 그러나 등록한다고 해서 조직의 기본자체나 목표가 변하는 것은 아니고 간호전문직의 강력한 대변자가 되도록 통합과 자율성을 유지하면서 간호와 간호원의 이익에 영향을 끼칠 수 있

는 능력을 증가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단지 노동조합의 등록으로 자동적으로 문제 해결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그러한 조치는, 이익과 손해에 대한 신중한 검토와 회원간의 토의가 있은 뒤 취해져야 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노동조합에 등록되어 있든지 되어있지 않은 간에 전문간호기구의 특색은 간호를 받는자와 간호를 제공하는자 양쪽에 똑같이 관심을 쏟는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전문기구의 책임은, 유능하게 직무를 수행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로서 간호원의 근무조건과 보수수준을 국내의 타전문직과 비교하여 적정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다.

오늘날 전문기구의 사회경제적 계획은 그 기구의 '정치적' 역할에 달려있다. 여기에서 '정치적'이란 '정당'과 동의어가 아니며 단지 어떻게, 언제, 누구에 의해서 정책결정이 이루어지 는가를 알고, 간호원과 간호를 위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힘과 영향력을 미치고자 하는 전문적 기구의 노력을 뜻한다.

(부록 A)

간호원의 사회경제적 복지에 관한 ICN전략 제의안

서 론

효과적인 사회 경제적 복지에 대한 계획은 모든 간호협회 전체사업 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ICN은 이 분야에 있어서 회원국을 돋고 자문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각국 간호협회가 아래와 같이 각기 다른 상황에 처해있다는 사실을 ICN은 인식하고 있다. 즉 :

- 몇몇 협회는 우수한 사회경제적 복지에 대한 계획이 확립되어 있어서 도움이 필요 없을 뿐 아니라 다른 협회를 보조할 능력이 있다.
- 법률적인 계약으로 인해 협상권자가 될 수 없는 사회적 상황에 처한 협회가 있다.
- 협상권이 가능한 하나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어 이를 주

서하는 협회.

— 법적권리는 있지만 이것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자문과 도움이 필요한 협회도 있다.

국가간호협회는 최상이라고 생각되는 계획을 수립하고 자신의 문제를 식별하고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원조방법을 최대한으로 이용할 수 있다.

목 적

1. 하기 사항을 통해 간호원의 근무조건과 생활을 향상시키고 증진하는 데 각국에서 간호협회가 활동할 수 있도록 보조하기 위함 :

— 활동이 필요한 문제를 식별 ;

— 우선순위 설정 ;

— 차원·발굴 ;

— 가장 적은 돈으로 가장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는 해결책과 시행방안을 결정 ;

— 진전상황을 계속 사정하는 방법 결정.

2. 이 주제에 관한 국제적 수준의 대변자가 되기 위함.

전 략

모든 회원국, 특별히 간호원의 교섭권은 있으나 이것의 책임을 효과적으로 성취시키기 위해서는 자문과 도움이 필요한 회원국을 염두에 두고 다음 전략이 입안되었다. 한 국가의 간호협회가 교섭권대로 인식되어 지지 않을 때는 간호원을 위해 조정되는 활동적인 협상에 영향을 줄 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

사회경제적 복지를 위한 ICN의 전략은 다음 요소를 포함한다 :

1. 교육자료

— 각국간호협회를 위한 사회경제적 복지 계획의 수립에 관한 지침.

— 해마다 새로운 것을 보완해 주어야 하는 것으로써, 최근에 발간된 간호와 관련된 사회경제적 복지에 대한 참고자료.

— 간호원을 위한 사회경제적 복지의 새로운 계획에 대한 정보의 회람.

■ 특집 ICN-CNR 보고

2. 회의, 세미나, 프로그램

- ICN의 프로그램은 기초수준보다 좀 더 향상된 수준으로 변화하고자 시도하는 협회의 요구에 기초를 두어야 한다;
- 지역회의나 세미나 계획시 논제로써 사회경제적 복지문제에 초점을 두도록 한다;
- 상당한 수준의 계획을 가진 각국간호협회는 다른 국가간호협회에 자문 요청을 받을 수도 있다;
- 자문위원회의 활용은 ICN사무총장의 자유재량에 따라 결정한다;
- 각국 간호협회는 공개회의에 참가하고자 하는 비회원을 초청할 수 있다(이렇게 하므로써 회원으로서 가입을 축전시킬 수도 있다).
- 차기 ICN총회에서 사회경제적 복지에 관련된 사항이 주제 또는 부제로써 포함되도록 한다.

3. 상호보조

- 유용한 자원(인력, 재정 및 특별계획—예를 들면 중요요원을 위한 훈련계획, 특별기금)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회원한다.
- 가능한 한 효과적이고 유용한 자원을 이용하기 위해 회원국간에 상호교류를 증진시키고 축전시킨다.

4. 간호요원의 근무조건과 생활에 대한 ILO규정 149와 건의사항 157

- 국제규범의 비준절차에 관한 정보를 알린다
- 비준을 하기 전에 국제규범조항의 비준과 수행에 관해 정부가 진행해 온 조치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다.

ICN은 국제기준 적용의 감독을 취급하는 ILO 지부와 협력한다.

ICN은 ILO에 특별위원회를 조직하여 비준하기 전 규정 149의 적용과 전의조항 157의 수행뿐 아니라 규정과 전의조항이 비준되지 않은 국가에서의 규정에 대한 수행경과를 조사토록 요청한다.

—ICN은 규정 149와 전의조항 157에 간호교

육, 간호실무, 법령 및 간호인력의 근무조건 및 생활조건의 기준이 제기되도록 추진한다.

〈부록 B〉

간호원을 위한 사회경제적 복지에 대한 계획수립 지침서

1. 각국 간호협회

1.1. 사회경제적 복지문제에 대한 협회의 견해

모든 ICN회원국 협회는 그들의 회원이 근무하는 산업적·전문적 분위기에 영향을 주고자 하는 범위를 결정할 위치에 있다.

협회는 노사단체 또는 전문직단체 혹은 양자의 입장을 취할 것인지에 따라 활동의 과정이 결정되어야 한다. 전문적인 문제만 다루기로 결정하는 협회가 있는가 하면 전문적 단체 및 노사단체로서 활동해야 한다고 결정한 협회도 있다. (즉, 지역사회와 이익과 지역주민의 복지에 관한 관심에 의해 그 활동이 결정되는 협회)

따라서 단지 전문적 발전에만 관심을 두는 협회가 있을 수 있고 고용조건과 보수에도 관심을 두는 협회도 있을 수 있다.

사회경제적 복지계획은 고용주와 피고용인간의 이익 균형에 관심을 끔는 것이라고 정의되며 때문에 양자의 경우 모든 협회는 본 계획에 참여하고 있다.

사회경제적 복지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 협회가 취하는 단계는 그 원칙은 비슷하다고 하겠으나, 계획의 세부목적은 협회의 목적에 따라 다를 것이다.

압력을 가하고 정책결정에 영향을 끼치므로써 협회에 의해 수행되는 활동은 정치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다.

1.2. 사회경제적 복지문제에 관한 협회의 법적위치

많은 경우에 있어서, 고용조건과 보수에 관한 협상권 혹은 전문적인 문제에 관한 영향권은,

협회에 법적주체권을 준 그나라의 특별법을 협회가 준수하도록 요구된다. 그 목적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위치를 확보할 수 있도록 이러한 필요조건을 조사하고 적절한 행동을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회경제적 복지계획을 착수하는 것이 그 조직에 적절하고 어떠한 등록이 적합한지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산업 및 법률전문가의 충고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

1.3. 협회의 조직

1.3.1. 협회결정시 회원의 참여

회원은 그들이 원한다면 협회의 결정에 영향을 줄수 있다고 느낄 수 있는 협회의 조직을 보충하는 것이 중요하다.

1.3.2. 의사소통

회원의 의견이 실행기구에 전달되고 실행기구의 결정사항이 회원에게 전달되는 원활한 의사소통의 경로가 보장되어야 한다. 이를 보장하는 방법은 회원을 대표나 주요멤버로서 추천하는 것이다. 이 사람이 실행기구에 소속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이 사회와 직접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나 협회의 직원을 통해서 혹은 선출된 회원을 통해서 할 수 있을 것이다.

1.4. 타 고용자기구와 각국 간호협회와의 관계

그 나라에 다른 고용자기구의 연합이 있는지 없는지 아는것은 중요하다. 또 가입이나 회원조언 및 국가 중요문제에 그들의 의견을 참고하고 있는지를 아는것 또한 중요하다. 고용인으로서 간호원이 직면하는 많은 문제는 모든 고용인이 직면하는 문제이며 몇개의 기구들이 근무기준시간, 최소한의 낭비, 출산휴가 같은 법지역 사회적인 규정을 다투고 있는 나라들이 많다 협회는 이런 연맹에 가입하거나 협해져서 간호원의 이익이 있는지 또한 협회의 자율성과 목적을 해치지 않고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2. 사회경제적 복지계획 수립의 원칙

2.1. 협회의 목적을 명백히 한다.

- 2.2. 사회경제적 복지계획에 관한 협회의 목적을 세우고 명백히 한다.
- 2.3. 사회경제적 복지계획의 목적을 충족시키는 방법을 수립한다.
- 2.4. 목적을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회원을 지도한다.
- 2.5. 목적과 관련된 사회경제적 복지의 결과를 평가한다.
- 2.6. 평가결과에 따라 사회경제적 복지계획의 목적을 재검토하고 필요하면 수정한다.

3. 필수정보

사회경제적 복지계획이 고안되기 전에 다음과 같은 정보가 요구된다.

- 그 나라에 있는 노동조합의 연맹은 무엇인가?
- 그 나라에 간호원을 대표하는 타협회가 있는가?
- 협상권을 갖고 있는 협회에 적용되는 법은 무엇인가?
- 법적구비요건은 무엇인가?
- 임금체계체계는 어떻게 작용하나?
- 논쟁해결에 적절한 기관으로는 어떤 것이 있나? (화해와 중재발선)

—개인적 상실은 어떻게 해결되는가?

- 결의사항을 위반하거나 수행하지 않는 경우 어떤 조적이 이에 대해 행사할 수 있는가?
- 국제회의나 국제적체의의 승인 및 적용절차는 어떤 과정을 통하는가? 간호요원에 관한 국제적인 협약이 정부로부터 승인되고 적용될 수 있도록 협회가 영향을 미치는 방법은 무엇인가?

4. 회원교육

협회의 모든 회원은 협회의 목표 및 목적과 사회경제적 복지계획의 목적을 이해하고 어떻게 그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협회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교육계획은 그 나라의 대학이나 다른 기관 혹은 교육계획을 맡고 있는 직원이 있는 협회로부터 얻을

수 있다.

교육대상의 수선순위는 직장별로 주요멤버에게 두되 이는 협회회원을 모집하는 역할을 하게 되며 협회내의 의사소통을 도와주고 상심되어 있는 회원이나 정의증에 있는 회원의 대변자 역할을 한다.

예컨대 협회는 노동법을 해설하고 지역적이고 지엽적인 상황에 있어 노동법의 영향을 다루고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협상기술을 개발하도록 회원을 교육시킨다.

협회는 다음 사항을 협조해야 한다 :

- 선택된 회원의 교육을 도와주기 위해 사회 경제적 복지문제에 경험이 있는 사람을 발굴하는 일.
- 주요회원을 교육하고 훈련하는 일.
- 숙련된 회원이 협상하는 현장을 견학하는 기회를 최근에 임명된 주요회원에게 제공하는 일.
- 도움되는 도서자료(도서명, 구입방법, 주문 할 수 있는 장소)를 찾는 일.

협상기술에 관해 고려해야 할 요소 :

- 협회회원과 함께 봉급인상 혹은 고용조건의 개선을 요구하는 준비작업을 계획하는 일.
- 고용주의 비공식적 회의 및 토의를 갖는 일.
- 반드시 주장할 이루어야 하는 일은 무엇이며 양보해도 좋은 일은 무엇인지를 결정하는 일.
- 회원간에 이익이 상충되는 영역을 식별하는 일.
- 협상이 실패되었을 경우, 이에 영향할 수 있는 협회의 행동을 결정하는 일.
- 회원에게 정보를 알려주는 일.

〈부록 C〉

문제의 제기

1. 제목의 변경

제목변경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간호원의 사회경제적 복지(social and economic welfare of nurses)’라는 용어는 1940년대 채택되었는데, 번역상에 항상 문제가 있었다. ‘Bien-être’는 기본의미를 전달하지 못한다. 위원회는 이 주제의 제목이 현대용어화 하기 위해 서는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가능한 대안은 다음과 같다.

1. Conditions of work and life of nurses.
2. Pay and conditions of work of nurses.
3. Salary and conditions of employment of nurses.
4. Labour relations programme.
5. Industrial relations programme.
6. Economic conditions of nurses.

대안 3과 5가 가장 많이 선택되었다. 어떤 나라에서는 이미 이 용어들이 특정한 방법으로 사용되어 왔기 때문에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인식되었다.

지금까지는 정확한 용어를 영어로 일단 합의한 후, 기타 ICN공용어에서 가장 적절한 의미를 주는 문구를 선정하고 이를 염두하기로 하였다. 본문서에는 CNR의 결정사항을 피력하는 前명칭인 ‘사회경제적 복지(Social and Economic Welfare)’를 사용하기로 한다.

2. ICN 회원국간의 상호작용

회원국에는 본 의제에 관한 상당한 수준의 전문가가 있으며 이를 타회원국간에 기꺼이 상호교류하고자 함을 확신하고 있다. 경제복지나 협상의 전문가를 가진 회원국은 이에 대한 자문이나 협조를 요청하는 회원국협회를 도울 수 있다. 협조하는 방법은 서면자문을 통해서나 교육프로그램에 주요멤버를 파견교육하든가, 현장에서의 문제해결을 위해 숙련된 직원을 보내주든가, 특정계획에 재정보조를 하는 등의 제방법이다.

이를 위해 아래 토의의제를 제기한다.

- 어떤 종류의 도움이 유용하고 받아들여질 만한가.
- 어떤 협조가 제공될 수 있는가.

3. 회의 세미나 및 기타 훈련계획

각국 협회는 ICN이 회의나 기타계획을 준비하고 제안하는 것을 기다려서는 안된다. ICN으로부터 회의및 기타 계획에 대한 자세에 의존하지 말고 각 회원국이나 지역별로 이를 주도해 나가도록 한다. 단일 협회나 몇 협회를 위해 유용한 행사가 무엇인지 또 조직 및 재정에 대한 의견을 CNR에 제시하도록 요청한다.

4. 한국이나 지역의 경제적복지에 대한 특별보조

노사관계와 교섭기술은 특별한 숙련을 필요로 한다. 많은 ICN회원국이 협상권을 가지고 있지

만 자국의 간호원에 대한 협상권을 갖고 있는 다른 기구에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데 기술이 필요한 회원국은 더 많다.

ICN은 이에 대한 전임직원이 수적으로 제한되고 있고 따라서 특정국가의 특정현장에 할애 할 수 있는 시간도 제한되어 있다. 그러나 ICN은 회원국 협회들이 협상권을 수립하거나 또는 교섭권을 가지고 있는 조직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회원국을 능동적으로 드와야 하는데 대한 중요성과 긴급성을 인식하고 있다.

이 문제에 있어서, 회원당 회비에 기초를 둔 ICN의 재정적인 어려움을 현실적으로 고려할 때 ICN이 회원국을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것을 요청한다. ☺

<47페이지에서>

곳에接触할려고 努力하고 있는 中입니다. 新聞貸與金 30,000,000원은 本會 長期計劃案에 따라 85年度부터 年次的으로 還納 받기로 今年度 全國 代議員 總會에서 議決 된 바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建立計劃하고 있는 看護員의집, 看護教

育 center, 地域社會를 위한 保健機關을 建立할 事業設計는 여러 他 專門分野의 人事들과 接觸하여 細密하고 完全한 計劃을 樹立하여 段階的으로 나누어서 年次的으로 數個年에 걸쳐 建立할 目標를 세우고 앞으로 나가야 되겠습니다. ☺

<62페이지에서>

첫째는 生理 現象의 Transient Phenomena(過渡現象)와 Dynamic Response가 生理現象의 研究의 教育에 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人體가 內的이나 外的 要因에 依한 過渡現象에 反應하는 과정이 動的인 生理現象을 探究하는데 重要하게 되었고 이 Dynamic response를 研究하기 為하여는 Computer, 數學 工學을 利用한 醫工學의 Analysis Method와 Measurement Technique이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둘째는 醫工學 과정의 必要性은 各種醫療機器로 測定하고 分析하는데 있어 使用된 各種의 數學의 Assumptions, 測定의 誤差와 限界性, 또한 Physiological Variables의 誘導 過程을

理解하고 있으면 醫療機器를 最大限으로 適切하게 使用할 수 있게 되고 Computer에서 나온 Clinical Data를 正確하게 解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醫工學 과정의 教育과정에 있어 現在各該當分野를 하나씩 전담하고서 研究하고 있는 本科의 技術要員이 中樞的인 役割을 할 것입니다.

結論的으로 本 科의 現況과 展望을 綜合하면 Biomedical Engineering과 Clinical Engineering의 二重 Function을 兼備하고 本 醫工學科는 Research, Education, Maintenance의 3個業務를 擔當하고 있으며 國內의 醫工學 發展에 重要한 役割을 할 것으로 展望되고 있는 바입니다. ☺